청 양 군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군 보

선 람	기관의 장

제188호 2019. 3. 15.



회 람							

발행 청 양 군 (편집 기획감사실 ☎041-940-2051)

고 시

○ 청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(선도지구) 시행계획 고시 ····· 3

청양군 고시 제2019 - 13호

청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(선도지구) 시행계획 고시

청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(선도지구) 시행계획에 대하여 농어촌 정비법 제59조에 의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,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3월 6일

청 양 군 수

1. 목 적

○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이 읍소재지에 교육, 문화, 복지시설 등의 불특정 다수 주민이 이용 가능한 적정수준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면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서비스 기능 향상을 도모

2. 사업 현황

○ 명 칭 : 청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(선도지구)

○ 위 치 :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일원

○ 면 적 : 0.96㎢

○ 주요사업계획

- 기초생활기반확충 : 청춘하우스 조성, 청양 면공관 조성, 봄봄음악방 조성 등
- 지역경관개선 : 청춘거리 조성, 쌈지공원 조성 등
- 지역역량강화 : 청춘 마을경관학교 운영, 청춘상점 육성, 청춘문화 프로그램 운영사업, 청춘문화기획단 운영 및 역량강화, 문화활동시스템 구축 등

○ 소요사업비 : 8,000,000천원(균특55,590,340, 도비559,034, 군비1,850,526, 자부담13,800)

○ 사업기간 : 2016년 ~ 2020년(5년간)

○ 사업시행자 : 청양군수

○ 위탁시행자 :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

3. 열람기간 및 장소

○ 열람기간 : 2018. 03. 06 ~ 04. 05(30일간)

○ 열람서류 : 청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(선도지구) 시행계획서

○ 장　　소 : 청양군청 농촌공동체과 농촌개발팀 (☎041-940-2802)